

자동차 급발진 관련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 (구미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312
----------	------

발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구미경, 강석주, 고광민,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남창진, 민병주, 박춘선,
서상열, 신복자,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임춘대, 정지웅, 최민규,
허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27명)

1. 주문

- 1. 국회는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여 자동차 급발진 등 중대 결함 의심 사고의

경우 입증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할 것.

- 2. 국회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가속페달 ·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독립적으로 기록하는 장치(독립 블랙박스) 설치 의무를 법률에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의무 이행을 위한 하위 법령과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

- 3.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조속히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 제안이유

-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와 기술적 한계로 인해 피해자가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 제3조(국회 정무위원회 소관)는 제조물의 결함 여부,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직접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는 전자제어장치, 센서,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복합 제품으로, 결함 여부를 입증하려면 제조사가 보유한 설계 자료, 시험 기록, ECU(전자제어장치) 데이터 등 내부 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이러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워, 실제로 최근 5년간 200여 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 중 단 한 건도 제조물 결함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제도는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기록 장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사고 당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작동 여부, 차량 제어 상태 등의 핵심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제조사와 피해자 간의 진실 공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제조물 결함 입증책임 전환과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는 단순한 소비자 권리 보호를 넘어, 교통안전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차량 데이터 기록 장치 의무화와 제조사 입증책임 강화 제도를 도입해 사고 원인 규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본 의회는 국회가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여 급발진 등 중대 결함 의심 사고의 경우 입증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과 제도를 신속히 마련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제조물책임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4. 이송처

- 국회/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서울특별시장

자동차 급발진 관련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와 기술적 한계로 인해 피해자가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 제3조는 제조물의 결함 여부, 손해 발생, 인과 관계를 피해자가 직접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는 전자 제어장치, 센서,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복합 제품으로, 결함 여부를 입증하려면 제조사가 보유한 설계 자료, 시험 기록, ECU(전자제어장치) 데이터 등 내부 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이러한 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 실제로 최근 5년간 200여 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 중 단 한 건도 제조물 결함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제도는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기록 장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사고 당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작동 여부, 차량 제어 상태 등의 핵심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제조사와 피해자 간의 진실 공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제조물 결함 입증책임 전환과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는 단순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넘어, 교통안전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차량 데이터 기록 장치 의무화와 제조사 입증책임 강화 제도를 도입해 사고 원인 규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입증책임 전환

국회는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여 급발진 등 중대 결함 의심 사고의 경우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적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2.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국회는 「자동차관리법」에 가속페달·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독립적으로 기록하는 장치(독립 블랙박스)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의무 이행을 위한 하위 법령과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조속히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8. 12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